

한국형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민지*

국 | 문 | 요 | 약

미국에서 미란다 판결이 갖는 의미와 다양한 미란다 경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어려운 단어나 어휘 사용으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형사피고인이나 용의자, 일반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란다 경고문의 이해도를 측정하려는 도구 개발과 연구용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미란다 경고와 관련된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형 미란다 경고에 대해 평가해보고 미란다 경고 고지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한국 경찰관들이 외국인 피의자나 용의자에게 미란다 경고를 효과적으로 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미란다 경고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지만 한글과 영문 미란다 경고문의 내용과 단어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 사용되는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제어 : 미란다 판결, 미란다 경고, 신문, 읽기 수준, 미란다 이해도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심리학박사.

I. 서론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Miranda v. Arizona*, 1966)은 수사절차의 원칙과 그 기준을 확립한 중요한 판결로 매우 상세하게 경찰관들의 행동지침을 제시한 판결이다. 미란다 판결의 영향으로 수사관들은 행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 받게 되는 형사 피의자나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 또는 이들을 신문하기 전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기부죄거부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에 토대를 둔 침묵권(right to silence)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해 고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이러한 미란다 경고는 미국의 형사사법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다른 여러 국가 및 한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도입되었다(김재원, 2007). 미국에서 수사관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경고를 고지하는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절차가 된 것과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당신은 묵비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로 시작하는 미란다 경고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에게 익숙한 절차가 되었다(Rogers, 2008). 최근 경기경찰청에서는 외국인 범죄용의자를 위해 8개국 언어로 구성된 미란다 원칙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급하였으며 현장 경찰관들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보완하고 외국인 범죄 처리 절차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신운철, 2011).

그러나 미란다 경고가 고지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나 용의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미란다 경고가 도입되고 사용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미란다 경고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각 관할권마다 미란다 경고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다양성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미란다 경고의 읽기 수준 측정, 그리고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미란다 경고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도구 개발 등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란다 경고와 관련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증적인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란다 경고가 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없다면 인권 침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

진실이 왜곡되어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미란다 판결이 갖는 의미와 미란다 경고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 해결책들을 모색하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형 미란다 경고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미국의 미란다 경고

1. 미국 미란다 고지의 내용

미란다 판결¹⁾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어네스토 아트로 미란다(Ernesto Arturo Miranda)는 멕시코 계 이민자의 아들로 1963년 17세의 여자아이를 납치하여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범인의 인종, 나이, 문신, 짙은 색 안경테 착용과 같이 범인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 네 명의 용의자 라인업이 실시되었고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네스토 미란다는 신문을 받게 되었다. 신문 당시 수사관은 라인업에서 그가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결국 미란다는 범행을 자백하였다. 재판에서 검찰은 미란단의 자백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변호인 측은 미란다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헌법 제5조 자기부죄거부권과 제6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신문 전에 고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란다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변호인 측이 아리조나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기각되었다. 변호인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결국 헌법 제 5조와 6조를 위반하여 얻은 자백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아리조나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미란다 판결로 인해 형사피의자 및 용의자가 구금 또는 행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 받게 되는 경우나 신문 전 수사관은 반드시 개인의 기본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1) *Miranda v. Arizona*, 384 U.S. 463(1966)

형사피의자나 용의자에게 고지해야 되는 미란다 경고는 다음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Rogers & Shuman, 2005; Rogers, 2008; Wrightsman & Pitman, 2010). 첫째는 침묵할 권리(right to silence)로 헌법에 보장된 자기부죄거부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에 그 토대를 둔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이며 진술을 거부한 것 자체도 재판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종종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둘째는 침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다(risk of waiving the right to silence). 즉, 침묵할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을 할 경우 그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셋째는 신문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counsel)이며 넷째는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무자력 피고인, an indigent defendant)에는 무료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free legal service). 마지막 다섯째는 미란다 경고에 고지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미란다 경고에 언급된 자신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continuing rights). 이러한 각각의 항목들을 고지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데 우선 각각의 고지된 권리들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²⁾ 관할구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각 항목을 고지한 후 바로 고지된 그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이해하였다고 답변하면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모든 권리를 우선 고지한 후에 고지된 권리들을 이해하였는지를 마지막에 한번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만약 각 항목에 대해서나 특정 항목에 대해서 “아니오” 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답을 한다면 수사관은 미란다 경고를 다시 재고지해야 한다. 미란다 경고의 각 권리에 대해 이해를 했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는 각각의 항목을 유념한 상태에서 수사관에게 진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이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듣는다면 수사관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질문

2) 포기 의사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당신은 제가 설명한 각각의 권리를 이해하십니까?(Do you understand each of these rights I have explained to you?); 2) 이러한 권리들을 유념해 둔 상태에서 저(우리)에게 진술하시길 원하십니까?(Having these rights in mind, do you wish to talk to me(us) now?)

도 할 수 없다.

또한 미란다 판결문에 의하면 미란다 경고를 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 요건은 미란다 경고에 대한 충분한 이해이다. 즉, 경고는 피의자나 용의자에게 “명확하고 분명한 언어(clear and unequivocal language)”로 고지되어야 하며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고지를 받은 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knowledge)는 뜻은 “현명한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the threshold requirement for an intelligent decision)”을 말한다. 그러나 경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내용적 요건만 갖추어 진다면 각 관할 구역마다 적절한 미란다 경고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고지하는 방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명확하고 분명한 용어에 대한 판단과 고지 방법은 각 관할 구역의 주관적 판단에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의 각 관할권마다 미란다 경고에 사용하는 단어나 고지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Kassin, Leo, Meissner, Richma, Colwell과 Leach(2007)는 631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미란다 경고를 고지하는 방법 및 의견을 조사한 결과 67%는 구두, 29%는 서면, 4%는 녹음된 경고문을 들려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피의자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구두로 고지하는 것이 필수이며 서면 고지는 필수가 아니다(Weisselberg, 2008). 두 번째 요건은 고지를 받는 자의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란다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미란다 관련 판결들은 대부분 미란다 포기에 대한 요건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형사피의자나 용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이며 지적으로(voluntarily, knowingly, and intelligently)”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피의자가 “포기하는 권리의 본질과 포기 결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완전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³⁾ 또한 권리의 포기는 지적인 포기(intelligent waiver)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3) “First the relinquishment of the right must have been voluntary in the sense that it was the product of a free and deliberate choice rather than intimidation, coercion, or deception. Second, the waiver must have been made with a full awareness both of the nature of the right being abandoned and the consequences of the decision to abandon it. Only if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interrogation’ reveal both an uncoerced choice and the requisite level of comprehension may a court properly conclude that the Miranda rights have been waived”(Colorado v. Spring, 479, U.S. 564 (1987), p. 573).

이는 “피고인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두 눈은 뜬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⁴⁾ 또한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 숙지하였다(full knowledge of his legal rights)’라는 문장이 사용된 미란다 경고 문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인 권리를 의도적이고 지적으로 포기(knowing and intelligent waiver)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각각의 선택에 대해 인지하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인지해야 하며, 강압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의해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포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문과 관련된 상황 전체 (totality of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interrogation)”를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사용한다. 즉, 나이, 지능, 교육수준, 형사사법체계와의 이전 경험의 정도, 신문 상황 등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여 포기 시 용의자 개인과 상황적인 요소들을 모두 평가해야 그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Ryba, Brodsky, & Shlosberg, 2007). 그러나 피의자 및 용의자들이 의도적이고 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미국의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

가. 다양한 미란다 경고

미국의 경우 미란다 경고문이 관할구역마다 조금씩 다른 단어를 사용하거나 경고문의 길이도 각각 다르며 읽기 수준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용과 소년범용을 따로 만든 경우도 있었지만 구분 없이 같이 사용하는 곳도 있으며 고지되는 방식도 경고문을 읽도록 하여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고지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두 가지 형태 모두를 각각 다른 시점에 고지 받기도 한다. Rogers와 그의 동료들은 미란다 경고문을 분석하여 어휘 및 문장 분석, 그리고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다(Rogers, Harrison, Shuman, Sewell, & Hazelwood, 2007; Rogers, Hazelwood, Sewell, Harrison, & Shuman, 2008; Rogers, 2008). 연구 결

4) “the defendant knows what he is doing and his choice is made with eyes open”(Iowa v. Tovar, 124, S. Ct. 1379 (2004), p. 1387).

과 미국의 50개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란다 경고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945개에 이르는 연방, 주, 카운티의 관할 구역에서 모두 886개의 미란다 경고문이 존재하였다. 또한 미란다 경고문들은 49개에서 54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학년-수준 어휘(grade-level vocabulary)를 추정하기 위해 Flesch-Kincaid와 플레시의 독해 용이성(Flesch Reading Ease)와 같은 여러 가지 측정 방법⁵⁾을 사용하여 읽기 이해도를 추정한 결과 경고문은 2.8학년 수준에서 대학 이상의 수준으로 어려움의 수준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5.6학년($SD=2.41$)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단어인 “변호인(counsel), 유지(retain), 포기(waive)를 포함한 60개의 단어들은 최소한 10학년(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수준($M=11.62$, $SD=1.77$)의 어휘인 것으로 나타났다.

Greenfield, Dougherty, Jackson, Podboy와 Zimmermann(2001)의 연구에서는 미국 뉴저지 주에 위치한 카운티에서만 모두 21개의 버전으로 이루어진 미란다 경고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읽기 수준은 4학년부터 대학 2학년 수준으로 다양하였다. Helms(2003)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주와 연방 관할 경찰에서 사용하는 미란다 경고문을 살펴본 결과 마약단속국의 경우 읽기 수준이 5.4학년이었지만 알코올 담배 화기국(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의 경우는 읽기 수준이 고등학교 1학년(9.9학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t. Louis 카운티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란다 원칙의 내용 중에서 하나의 요소는 16학년 이상의 교육 수준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6.5학년의 교육수준이 필요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Grisso, 1998, Rogers, 2008에서 재인용).

다양한 연구들이 학년-수준 어휘의 개념을 사용하여 미란다 경고문에 사용된 어휘력 수준을 측정하여 읽기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이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Rogers, Hazelwood, Sewell, Blackwood, Rogstad, & Harrison, 2009). 첫째, 학년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전

5) 읽기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Flesch-Kincaid로 학년수준의 읽기 능력을 추정할 수 있으며 각 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의 약 75%의 이해도를 요구한다. 플레시의 독해 용이성은 문장의 길이와 단어 당 음절수를 바탕으로 계산되며 수치는 성인인구 대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71-80 사이는 “상당히 쉬운” 정도를 나타내며 성인의 약 80%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며 약 7학년 정도의 읽기 이해도를 필요로 한다.

체 내용에 대한 이해도의 약 75%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전체 내용의 1/4가량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학년 수준 어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단어를 제시하고 세 개의 제시된 예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도록 되어 있다. 즉, 그 어휘를 실제 사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어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미란다 경고에 사용된 어휘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면 실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등학교 2, 3학년 수준의 어휘실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적용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총체적인 어휘 능력 및 이해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란다 경고를 듣고 제시된 정보를 처리하여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야 하는 형사피의자 및 용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도 감안해야 한다(Rogers, 2008). 사람들은 미란다 원칙에 대해 이미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고, 피의자가 인지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검거 또는 구금되는 상황은 매우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인데 이때 미란다 고지를 받게 되므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한 구두로만 고지하거나 서문으로만 제시하는 경우, 또는 구두고지와 서문고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지를 받는 피의자나 용의자의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결국 다양한 길이, 용어, 어휘 수준으로 구성된 미란다 경고를 교육 수준이 낮은 범죄자들이 매우 스트레스가 높고 불안이 고조되는 체포 또는 구금 상황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미성년 피의자나 용의자를 대상으로 고지되는 미란다 경고문의 경우에도 성인용 미란다 경고문과 비슷하게 그 길이와 난이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Rogers와 그의 동료들(2008)의 연구에서 29개의 주의 109개 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년범용 미란다 경고문을 분석한 결과 단어 사용의 범위는 52개에서 526개였으며 포기문까지 합하면 64개에서 1020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50 단어를 사용하고 초등학생부터 대학교 이상의 이해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소년범들이 미란다 경고를 이해하려면 단어를 이해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하며 그 의미를

자신의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경우 소년범들은 고등학교도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읽기 수준은 평균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수준이며 지능 지수도 낮다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또한 소년범용 미란다 경고문이 따로 없고 성인용 미란다 경고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란다 경고를 구두로 고지하는 경우는 문서로 고지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사관들이 구두로 고지하면서 혼란을 주거나 쉽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특정 부분은 누락시킬 수 있으며 소년범의 경우 구두 고지를 이해하는데 더욱 더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Wrightsmen & Pitman, 2010). 예를 들면, *Fare v. Michael C.*(1979) 사건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16살 소년범은 미란다 고지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자신의 보호관찰관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Wrightsmen & Pitman, 2010에서 재인용).

나. 미란다 경고에 대한 이해도 평가

미국에서 진행된 한 설문 조사에서 대중들의 81%가 침묵할 권리, 95%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88%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법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Belden, Russonello, & Stewart, Inc., 2001). 또한 Payne, Time과 Gainey(2006)의 연구에서 약 80%의 경찰서장들은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미란다 경고의 고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90% 가까이는 대중들이 미란다 경고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란다 경고에 대해 “알고”있다고 하더라도 “알고”있다는 것은 결코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일 수 없으며 그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특정 피고인이 체포 또는 수사관에게 신문을 받기 전 미란다 경고가 제대로 고지되었는지, 고지를 받았다면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지,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그 포기 결정이 자발적이고 의도적이며 현명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포기 결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

단에 대한 법임상적 평가(forensic evaluation)가 이루어진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란다 경고문에 사용되는 단어나 구절, 그리고 전체 내용의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란다 경고문 및 포기문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몇 가지의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Grisso(1981)는 용의자가 미란다 경고문에 사용된 단어와 구절을 이해하였는가와 경고문에 제시하고 있는 권리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Ryba et al., 2007에서 재인용). 그리하여 이 두 가지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4개의 도구를 개발하였다. 첫째는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미란다 원칙의 이해도(Comprehension of Miranda Rights, CMR)라는 도구로 미란다 경고문에 포함된 요건들이 각각 무슨 뜻인지 설명하면 전문가인 평가자가 그 정확도를 판단한다. 두 번째는 미란다 원칙 이해도 -인식(CMR-Recognition) 도구로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란다 원칙의 각 요건들의 뜻이 제시된 보기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는 미란다 어휘 이해도(Comprehension of Miranda Vocabulary, CMV)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란다 원칙에 사용되는 여섯 개의 중요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도록 하는 도구이며 전문 평가자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네 번째 도구는 신문 시 권리의 기능(Function of Rights in Interrogation, FRI)으로 1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 신문과 법정에서의 가상의 상황 묘사와 함께 그림을 제시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 미란다 원칙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여 체포 및 신문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4가지 측정도구는 Grisso(1981)가 발간한 책에 포함되었지만 공식적으로 1998년에 각각 도구에 대한 전문가 설명서, 채점 방법, 검사 도구를 포함한 책으로 정식 버전이 출시되었다(Ryba et al., 2007). 그러나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Grisso가 개발한 원래의 도구가 업데이트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측정해주는 구금 및 신문 절차에서의 강압에 대한 인식(Perceptions of Coercion in Holding and Interrogation Procedures)을 포함하여 미란다 원칙 이해도 도구-II(Miranda Rights Comprehension Instruments-II)가 완성 되었다(Ryba et al., 2007).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미란다 경고에 대한 이해도 평가는 법임상 전문가 또는 임상심리 전문가들

중에서 미란다 평가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미란다 경고를 고지받은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지능이나 인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이 함께 사용된다(Ryba et al., 2007).

또한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 미란다 관련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Rogers, Rogstad, Gillard, Drogin, Blackwood와 Shuman(2010)은 미란다 경고문에 대한 이해와 권리의 포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미란다 퀴즈(Miranda Quiz)를 개발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들과 정신이상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미란다에 고지된 권리를 사용 또는 포기하였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조사하였고 피고인들이 미란다 원칙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였다. 첫째, 미란다 경고문의 대부분은 침묵 자체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침묵할 수 있다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결국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권리(right)라는 단어를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이해하기보다 진술하거나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 즉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나 또는 무엇인가 “옳다”(또는 맞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진술을 하거나 또는 침묵을 하는 것 모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침묵하여 유죄 판결을 받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답변하였다. 둘째, 진술의 위험성(risks of talking), 즉 진술 자체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비공개적인 진술(off the record), 진술을 취소한 경우, 서명하지 않은 미란다 포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counsel)의 경우 미란다 경고문에는 신문 전 경찰의 입회 없이 변호사를 비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피의자나 용의자가 신문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참석하기 전 까지 신문은 무조건 중지되어야 한다. 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의 변호인들이 이러한 내용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해야 할 지 여부를 현명하게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gers, 2008). 넷째, 무료로 제공되는 법적 서비스

(free legal service)의 경우 미란다 원칙 대다수(65.5%)가 법적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고지되고 무료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고문의 경우 읽기 수준이 평균 10.20학년으로 거의 대부분의 피고인들의 읽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용의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들이 법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이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권리의 지속성(continuing legal rights)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신문 과정 어느 때라도 자신의 권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소수의 미란다 경고문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약 25%에 경우는 “포기를 철회할 수 있다(withdraw your waiver)”라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하여 Rogers와 그의 동료들(2010)은 미란다 원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란다 퀴즈를 개발하였고 미란다 퀴즈를 피고인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31.5% 피고인들의 경우 미란다 원칙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하였으며 30.9%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9.4%는 진술을 거부하면 경찰이 기소내용을 부풀려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95.9%는 자신의 진술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25.9%는 포기를 하는 경우 포기서에 서명을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었으며 52.0%는 “비공개적인” 진술은 법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8%는 진술을 철회한 경우 그 진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피고인들은 침묵할 권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30.2%의 피고인은 변호인이 신문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도 경찰의 신문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18.1%의 경우 변호인을 비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의 받을 권리라는 중요한 장점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개인 변호인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를 나타내는 “무자력(indigent)”과 같은 난해한 단어는 이해하지 못하였고 법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7.8%의 피고인과 58.5%의 대학생들

은 “무자력 피고인”의 뜻을 “공식적으로 기소된 피고인(defendants who have been formally indicated)”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18.8%의 피고인과 14.3%의 대학생들의 경우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해주면 그 비용은 가족들이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7.2%의 피고인과 26.9%의 대학생들은 침묵할 권리를 포기하면 포기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피고인들과 대학생들 간의 미란다 원칙에 대한 이해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생들이 진술의 위험성, 법적 권리의 지속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료 법적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는 피고인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 피고인들 보다 더 높은 대학생들이 무자력(indigent)이라는 단어와 기소(indicted)라는 단어를 혼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란다 퀴즈 점수로 측정한 미란다 이해도와 지능, 성취도, 교육수준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미란다 이해도와 교육 수준, 지능, 구두 또는 문서화된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미란다 경고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와 실제 미란다 경고에 대한 이해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대학생들은 미란다 경고의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심리학자이며 미란다 경고의 이해도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Rogers(2008)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미란다 경고 및 권리 포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철폐해야 하는 내용들을 1)최소한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교육을 받아야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미란다 경고, 2)최소한 8학년(중학교 2학년)의 교육을 받아야 이해할 수 있는 소년범용 미란다 경고, 3)125단어를 초과하는 미란다 경고, 4)법적인 용어를 포함하는 미란다 경고, 5)내용에 결함이 있는 미란다 경고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전반적인 이해도 증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첫 세 가지의 내용만 수정된다면 미국에서 사용되는 약 11.8%의 일반적인 미란다 경고와 66.4%의 소년범용 미란다 경고가 철폐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Rogers와 그의 동료들(2008)

는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란다 경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1)미란다 경고 및 포기문의 읽기 수준(Flesch-Kincaid reading level)은 6학년 이하로 만들 것, 2)문장 복잡도⁶⁾는 40점 이하로 할 것, 3)법률용어나 혼동하기 쉬운 동음이의어와 같이 10학년 이상의 이해도를 요구하는 어려운 단어는 피할 것, 4)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1억 단어 당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정도)는 사용하지 말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란다 경고문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용의자나 피고인들과 같이 다양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미란다 경고문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형사피의자나 용의자들이 한국형 미란다 경고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험결과 이지만 한국 피의자나 용의자들의 한국형 미란다 경고문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 않고 많은 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한국에서도 미란다 경고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미란다 경고문의 이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법적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취약 집단의 미란다 경고 이해도

성인들이 미란다 경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은 성인보다 인지적인 능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거나 떨어지는 취약 집단의 경우에 미란다 경고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순응적이고 일반적으로 순진하며, 협조 요구를 쉽게 받아드리는 특성이 있어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잘 혼동하며 성인에게 복종하는 경향이 있어 고지되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권리를 쉽게 포기할 가능성

6) 그래머틱 문장 복잡도(Grammatik Sentence Complexity)는 절과 전치사구의 빈도를 고려한 복합문장의 비율을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1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나타낸다. 대학에서 사용하는 재무회계 개론 교과서의 평균 문장 복잡도는 61.36(SD=16.23)으로 알려져 있다(자세한 내용은 Rogers et al.(2008) 논문 참고).

이 크다(Leo, 2008). 소년범들의 경우에는 미란다 경고에 제시된 단어나 어휘를 그대로 이해하는 것 그 이상의 이해력이 필요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란다 경고의 이해에 있어서도 미성년 용의자들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몇몇의 미성년 용의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권리가 수사관들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언제든지 수사관들이 다시 철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eld, 2006). 최근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요인들, 즉 나이, 지능, 인종, 경찰과의 접촉 경험이었는지 여부, 재판 경험, 사회경제적 지위, 정신병, 심리사회학적 성숙도와 학습장애 등이 미란다 경고문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LcLachlan, Roesch와 Douglas(2011)는 12세-19세 사이의 경찰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란다 원칙의 이해도와 여러 요인들 간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나이가 어리고 지능지수가 낮을수록 미란다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 인종, 영어가 모국어인지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경찰과의 접촉 경험은 미란다 이해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ogers, Harrison, Hazelwood와 Sewell(2007)은 107명의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미란다 경고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신이상 피고인들의 경우 읽기 수준이 6학년 미만인 가장 쉬운 미란다 경고문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장 단순한 미란다 경고를 이해하는데 약 7학년 수준의 읽기 이해도 수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미란다 경고에 대해 약 25% 정도의 이해도를 가진 정신이상 피고인의 경우 인지적 능력(지능 및 이해력)과 일반적인 적응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란다 경고를 구두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집중력과 이해도가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해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st와 McGregor(2012)는 듣기에 문제가 없는 언어장애 및 언어학습장애가 판정을 받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1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미란다 경고문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언어장애 및 언어학습장애가 있는 경우 미란다 어휘

를 정의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미란다 문장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데도 정상인에 비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미란다에 경고에 대한 이해도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5세 이상 청소년들의 경우 미란다 경고에 대한 이해도가 성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능이 낮은 경우에는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피의자나 용의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인지적 능력이 부족한 정신 지체인 경우,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미란다 경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들 중 스페인계 범죄자들이 1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8백만 명의 히스패닉들은 영어를 전혀 못하고 5.1백만 명의 경우는 약간의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 Bruno, 2003과 Sabol et al., 2007, Rogers, Correa, Hazelwood, Shuman, Hoersting, Blackwood, 2009에서 재인용). 미국에서는 히스패닉 피고인이나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스페인어로 번역된 미란다 경고를 고지하고 있지만 번역된 미란다 경고문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Rogers와 동료들(2009)은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인용과 미성년자용 영문 및 스페인어 미란다 경고문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인 스페인어 미란다 경고문은 영문에 비해 5단어가 짧았지만 스페인어 미란다 포기문의 경우에는 영문보다 11단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놀랍게도 몇 개의 스페인어 경고문의 경우 중요한 권리인 침묵할 권리 또는 변호사 선임할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누락시킨 내용은 언제든지 자신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마지막 부분이었다. 또한 몇 개의 미란다 경고문은 어색한 문구나 오번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스페인어 미란다 경고를 고지하는 것이 히스패닉계 형사 피고인이나 용의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 하지만 경고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회 취약집단의 미란다 경고의 이해도와 관련한 연구들은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성인을 대상을 진행된 미란다 경고의 이해도 연구 결과에서 특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 취약집단의 미란다 경고의 이해도는 비교적 더욱 낮을 수밖에 없으며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도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란다 경고의 이해와 경고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 능력은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함께 개인의 기본적인 능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즉, 미란다 원칙에 대한 이해와 사고 능력과 더불어 언어적 능력과 정신이상과 같은 심리적 문제, 그리고 나이나 지능과 같은 개인의 능력이나 장애의 수준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사용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이해 및 사고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청소년, 정신이상자, 언어 관련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마약이나 알코올의 사용으로 환각 또는 취한 상태에서 미란다 경고가 고지되는 경우에도 현저한 인지 능력의 저하로 미란다 고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

라. 경찰 수사와 미란다 권리 포기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제시되는 미란다 경고를 이해도가 떨어지고 취약집단의 경우 그 이해도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미란다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으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미란다 권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는 미란다 경고에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관들은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o(1996)는 미국 캘리포니아 경찰들의 수사와 신문 과정을 직접 또는 녹화된 182개의 내용을 관찰하였는데 5명의 용의자 중 4명은 일상적으로 미란다 권리를 포기하고 신문을 받는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용의자들이 미란다 권리를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수사관들이 전략적으로 용의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용의자의 편인 것처럼 말하면서 미란다 고지 및

포기에 대한 절차를 최소화하여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권리에 대한 포기가 용의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진술(off the record)”을 하도록 유도하는 진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 범죄 경력이 없는 용의자의 경우에 경험이 있는 용의자들에 비해 미란다 권리는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assin과 Norwick(2004)은 미란다를 포기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신문 전략이 미란다 포기를 유도하는지 여부, 그리고 용의자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미란다 포기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평균 58%의 모의 용의자들의 자신의 미란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Leo(1996)의 연구에서 실제 용의자의 미란다 권리 포기 경향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사용하는 진술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용의자의 유무죄 여부의 경우에는 미란다 권리포기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절도를 저지른 유죄 용의자의 경우 36%가 미란다 권리를 포기하였는데 포기 이유를 수사에 협조하여 자신이 유죄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전략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모의 절도를 저지르지 않은 무죄 용의자의 경우 81%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는데 그 중 72%는 자신은 무죄이고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미란다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즉, 무죄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무죄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미란다 권리를 포기하지만 일단 신문이 시작되면 수사관들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강압적인 신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수사관이 용의자가 유죄라는 심증을 형성하게 되면 용의자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유죄를 추정하는 질문들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신문 기술을 사용하며 자백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용의자는 더 방어적이게 되어 수사관이 용의자를 유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무죄인 용의자들이 허위로 자백한다는 사실이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과 실제 재판 사건들로 입증되었다(Kassin, Goldstein, & Savitsky, 2003; Kassin, Drizin, Grisso, Gudjonsson, Leo, & Redlich, 2010). 이러한 이유로 용의자가 실제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며 이는 오히려 무죄인 용의자를 재판의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III. 한국형 미란다 경고

위와 같이 미국에서 미란다 경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란다 경고문에 사용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형 미란다 경고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한국형 미란다 경고

한국에서도 헌법 제 12조 2항⁷⁾의 진술거부권과 제 4항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제 5항⁹⁾에는 체포나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 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72조¹⁰⁾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비슷하게 제 244조 3항¹¹⁾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 신문

7) 헌법 제 12조 2항: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8) 헌법 제 12조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9) 헌법 제 12조 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10) 형사소송법 제 72조: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11) 형사소송법 제 244조 3항: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경한(2002)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진술거부권의 주체는 제한이 없고 현재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외국인의 경우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은 구두 진술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을 기재한 서면제출도 포함된다. 또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고지를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해야 하며 신문이 중단되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음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구두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짓이나 손짓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 87조, 제 88조, 제 209조에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즉,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 또는 용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범죄사실의 요지 및 구속이 이유, 2)진술거부권, 3)변호인 선임권, 4)변명의 기회 제공, 5)권리를 행사할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어야 한다.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외국인 범죄용의자에게 미란다 경고 고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스마트폰 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신윤철, 2011). 이 애플리케이션은 현행법 체포, 긴급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와 같이 체포 유형과 33개의 범죄의 유형별로 미란다 경고문을 선택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니어, 태국어의 8개국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음성 녹음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관들의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예를 들어, 절도 현행범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는 경우에 한글 미란다 경고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절도죄를 범한 현행범이므로 형사소송법 제 212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하겠습니다. 귀하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귀하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미란다 경고

의 내용은 범죄사실의 요지 및 구속이유,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제공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의 미란다 경고 고지 실태 및 문제점

한국에서의 미란다 경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신의기와 강은영(2002)은 범죄수사 시 피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문 대상자 692명 중에서 미란다 고지의 핵심인 체포나 구속 당시 변호사 선임권, 진술 거부권, 변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비율이 구속 절차와 체포 유형에 따라 각각 평균 15.8%와 16.1%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변호사 선임권 고지 비율이 73.7%, 진술거부권 고지 비율이 65.0%, 변명할 기회는 14.7%였다. 고지 받은 권리의 수와 그 구성을 살펴보면 변호사 선임권만 고지 받은 경우가 18.9%, 진술거부권만 고지 받은 경우는 10.3%, 변명할 기회만 고지 받은 경우는 1.5%였다. 변호사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을 함께 고지 받은 경우는 53.3%, 변호사 선임권과 변명할 기회를 함께 고지 받은 경우는 2.2%, 진술 거부권과 변명할 기회를 함께 고지 받은 경우는 0.5%로 나타나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함께 고지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진술 거부 시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59.9%였다. 고지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구두로 고지 받은 경우가 77%, 서문으로 고지 받은 경우 5.8%, 미리 작성된 조서에 형식적으로 날인한 경우가 17.2%였다. 고지 시기도 체포나 구속 시 고지 받은 경우가 42.9%, 피의자 신문 시작 전이 43.4%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놀랍게도 피의자 신문이 끝난 후에 고지 받은 경우도 8.6%, 고지 받지 못하였지만 조서에 쓰여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5.1%가 되었다. 또한 미란다 고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36.0% 뿐이었으며 조금 이해하였다가 35.0%,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가 20.1%,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가 8.9%인 것으로 나타나 미란다 고지 내용에 대한 이해는 형식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경찰(검찰)이 너무 간단히 말하고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62.5%, 너무 빨리 말하거나 읽어서 알아듣기 어려웠다가 19.0%, 조서에 미리 작성된 내용을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가 12.1%, 피의자 권리고지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었다가 5.9%를 차지하여 권리 내용 자체의 이해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지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이나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21.0%, 여성이 12.6%였다. 즉, 미란다 고지 내용이나 고지되는 시점도 일관적이지 않고 고지된 내용을 피의자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준호(2007)는 국내 피의자 권리 고지 실태와 이해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현재 재직 중인 경찰과 검찰 수사관 146명을 대상으로 미란다 고지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의자 체포 및 구속 조사 시 미란다 경고를 고지하는 방식은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해준 후에 서문으로 된 고지사항을 피의자에게 읽게 한다는 응답이 44.4%였고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피의자에게 말해준다는 응답이 31.7%, 서문으로 된 피의자 고지사항을 피의자에게 읽어준다는 응답이 18.8%, 서문으로 된 피의자 고지사항을 피의자가 읽게 한다가 4.9%로 미란다 고지 방법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는 답변은 82.9%였고 이해하지 못한 피의자들에게 권리를 다시 설명해 준다고 답변한 경우는 84.0%였지만 그냥 조사를 시작한다고 답변한 경우도 13.7%였다. 또한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였을 때 피의자가 그 뜻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였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고지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범죄사실(74.8%)과 변호사 선임(95%)에 대해서는 잘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체포의 이유(34.5%)와 변명의 기회(26.9%)의 고지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결과 국내 수사관들 대부분은 피의자 권리를 부분적으로만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피의자 권리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차준호(2007)의 두 번째 연구에서 일반 청소년과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의자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총 24명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범들은 피의자 권리를 제시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14.3%, 고지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56.7%였으며 주로 구두로 고지 받은 경

우가 58.3%였다. 또한 95.8%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변호사 상담 경험도 79.2%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소년범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범죄사실에 대한 고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혐의”라는 단어의 뜻의 경우 소년범과 일반 청소년 모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법적인 단어 또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바꾸거나 쉽게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사피의자나 용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실태 조사에서 미란다 경고 고지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파악되었다(신현중, 탁종연, 김택수, 이영미, 김동범, 2007). 조사 대상자 19명에게 실시된 면접 조사에서 많은 경우 영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체포자의 신분이나 소속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면접 조사 대상자들 중에서 체포 시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19명 중 14명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선임시기가 체포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에 선임되었으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할 권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고지 받는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선변호인의 변호에 대해서도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느껴 매우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형사피의자를 미성년자 취급을 하거나 청각장애인 피의자들은 수화 통역사 없이 진술을 하거나 수화 통역사가 통역은 했지만 수화 통역사가 자신의 말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의 연구 결과들은 조사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미란다 경고 고지 여부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억을 못하여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있어 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루어진 미란다 이해도 관련 연구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 연구 결과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이해도도 매우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들로 미루어보아 한국에서 미란다 고지 실태와 전반적인 이해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드러나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미란다 경고 고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들이 파악되었다. 첫째, 미란다 권리 고지 내용이 일정하지 않다.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 비율을 높였지만 다른 내용들은 고지 비율이 낮았다. 둘째, 고지 방법이 일정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구두로 고지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서문으로 고지되거나 두 방법 모두 사용을 하거나 조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읽고 서명하는 것으로 고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미란다 경고 고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성인과 소년범 및 청소년들은 미란다 고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고지 시기가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체포 또는 구속된 직후나 피의자 신문 시작 전에 고지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신문이 끝난 후나 고지 받지 못하고 조서에 쓰여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다섯째, 장애가 있는 형사피의자의 경우 미란다 경고를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으며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여 특히 취약한 집단을 상대로 개인의 권리보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형 미란다 경고문의 문제점

미국의 미란다 경고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란다 경고문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용 미란다 경고문 애플리케이션에는 절도 현행범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미란다 경고문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귀하는 절도죄를 범한 현행범이므로 형사소송법 제 212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하겠습니다. 귀하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귀하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경고문의 내용과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한국형 미란다 경고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한국형 미란다 경고문은 미란다 경고의 개념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 우선

한국형 미란다 경고문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선임권만을 포함하고 있다. 즉, 미국의 미란다 경고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때 무료로 선임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이는 미국에서 히스패닉 피의자 및 용의자들을 위한 스페인어 미란다 경고문 몇 개는 중요한 권리들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Rogers et al., 2008). 또한 미란다 경고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고는 있고 특히 다른 권리에 비해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 비율이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후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2011년은 전체 형사사건의 0.17%, 2010년은 0.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홍, 2012).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이렇게 낮은 가장 큰 원인으로 비용문제를 꼽고 있어 경제적인 여건으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미란다 경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경고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수사절차에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부 검사나 수사관들의 변호인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변호인들이 신문 참여를 기피한다는 점,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하려면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제도의 문제점 및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김재홍, 2012). 이미 헌법 제 12조 4항에도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료로 변호인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뿐만 아니라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는 경우 진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형사소송법 제 244조 3항의 3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내용도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진술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한국형 미란다 경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한(2002)도 범죄사실의 요지와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진술내용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문 전에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이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고문 방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도와주고 신문과 정의 객관성과 임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한국어 미란다 경고와 영문 미란다 경고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귀하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라는 내용에 대한 영문 경고는 “You have the right to appoint a lawyer and have him(her) present with you while you are being questioned”로 되어 있는데 영문 문장에 대한 직역은 “귀하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신문 시 그(그녀)가 당신과 함께 참석할 수 있다”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미란다 경고보다 영문의 내용이 더 세부적이며 자세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영문과 스페인어 미란다 경고문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것처럼 타 언어로 고지되는 미란다 경고가 한국어 미란다 경고를 바탕으로 번역되었는지 아니면 영문 미란다 경고를 직접 사용하되 한국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된 내용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어 미란다 경고와 영문 및 기타 언어의 미란다 경고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나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절차나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한국형 미란다 경고문에 사용된 단어의 적절성이다. 우선 “진술거부권”, “선임”과 같은 전문적인 용어나 어려운 단어들이 사용되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와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진술 거부권이라는 법적 용어는 일반인들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아니며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전 연구 결과처럼 형사 피고인이나 용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진술거부권을 진술 거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선임”과 같은 한자어의 경우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나이가 어린 소년범의 경우에는 그 의미

를 이해하기 힘들다. “선임”의 단어 자체의 의미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진술거부권”과 같은 법적인 용어나 “선임”과 같은 어려운 단어는 그 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다른 단어나 표현으로 대체하고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미란다 경고는 명확하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쉬운 문장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형 미란다 경고의 마지막 부분에는 “변명”의 기회가 있음이 고지되는데 우선 변명할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변명”이라는 단어는 형사피의자나 용의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72조에 의하면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변명의 방법이나 내용, 변명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 내포하고 있는 변명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변명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국어사전¹²⁾에 의하면 “변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또는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말로는 구실, 핑계, 해명, 발뻠 등의 단어들이 있다. 형사피의자나 용의자들이 체포나 신문과 같이 매우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 변명할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서 의미하는 “변명”의 의미로 해석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형 미란다 경고에서 “변명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영문으로 “You have the right to speak for yourself”로 되어있으며 이 의미는 “귀하는 자신을 위해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영문의 경우 그 의미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될 가능성이 크지만 “변명할 기회”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변명”이라는 단어는 형사소송법에서 의미하는 “변명”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

12) 네이버 국어사전

달될 수 있는 중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바꿔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 사용되는 미란다 경고는 성인용과 소년범용으로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서도 성인보다 청소년들은 미란다 경고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이루어진 설문 조사에서도 그 어려움이 입증되었다. 성인도 이해하기 힘든 “진술거부권”이나 “선임”과 같은 법적인 용어나 어려운 단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으로 바꿔 소년범용 미란다 경고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란다 경고문에 대한 청소년 및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이해도를 측정하고 이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적절한 단어나 표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미란다 경고에 제시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고지된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여 확인하고 고지 받은 자신의 권리들을 염두해 두고 진술을 할 것인지를 말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244조 3항 2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에 제시된 미란다 경고문에는 고지된 각각의 미란다 권리를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확인하는 질문들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설문 조사에서 미란다 경고 고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만 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므로 각각의 미란다 권리를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란다 경고문을 다시 한 번 고지하거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고지해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방법은 미란다 경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각 항목 당 그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매번 확인하여 이해를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을 경우 다음 항목을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항목을 고지하고 제일 마지막에 고지된 내용들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IV. 결론

일반인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가장 쉽게 법이나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지만 그 정보들은 많은 부분 왜곡되어 제공된다고 알려져 있다(Hans & Dee, 1991). 한국과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미란다 경고의 내용이 알려지게 되어 미란다 경고에 대해 “알고”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이나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 형사피의자나 용의자, 일반인 및 청소년들은 대부분은 고지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미란다 고지 내용이나 방법이 일관적이지 않고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란다 경고가 고지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나 용의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인권 침해의 문제와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김경한(2003)은 미란다 경고를 고지하는 것으로 피의자나 용의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고지 받은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확신시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란다 경고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형 미란다 경고와 관련하여 세 가지 분야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와 같은 각각의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란다 경고 및 새로 개발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 미란다 경고에 사용된 단어나 문장의 길이 등에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와 미란다 경고의 단어, 어휘, 문장의 난이도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영어를 포함한 몇 개의 특정 언어를 대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학년-수준 어휘나 플레시의 독해 용이성과 같은 개념을 한국어를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한국어를 대상으로 독해 용이성이나 문장의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공식이나 방법이 있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란다 경고의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사용하는 수사기관에 따라 난이도에 차이는 없는지, 단어나 어휘의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형 미란다 경고문에 누락되어 있는 침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무료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완성된 한국형 미란다 경고문에 대해 일반인 들뿐만 아니라 용의자나 피의자, 그리고 외국인 범죄 용의자들이 고지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고지문을 읽거나 듣고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고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미란다 경고문이 일반적으로 익숙하다고 생각하며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특정 내용이나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연구용으로 개발된 미란다 퀴즈를 번역하고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또한 최근에 개발된 외국어용 미란다 경고문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도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에게 체포나 구금에 대해 해당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수사관의 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란다 경고 외에도 자신이 체포되었거나 구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대사관에 연락하여 알릴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의 제 36조¹³⁾에는 파견국이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당국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당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미란다 경고를 고지할 때는 형사피의자나 용의자의 해당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체포나 구금에 대해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하여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적절

13) Article 36 of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if he so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shall, without delay, inform the consular post of the sending state if, within its consular district, a national of that State is arrested or committed to prison or to custody pending trial or is detained in any other manner. Any communication addressed to the consular post by the person arrested, in prison, custody or detention shall be forwarded by the said authorities without delay.”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 제공되어 있다: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9_2_1963.pdf

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대상 미란다 경고문의 내용 및 고지 방법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미란다 경고 고지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미란다 경고 고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관들의 고지 실태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와 같이 미란다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의 고지 실태에 대한 연구들도 필요하다. 또한 미란다 경고 고지에 대한 수사관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미란다 경고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미란다 경고를 고지하더라도 대부분의 용의자들이 미란다 권리를 포기하고 자백을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미란다 원칙 고지가 경찰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ime & Payne, 2002). 결국, 미란다 경고가 신문이나 수사과정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 수사관들도 미란다 경고를 고지하는 것 자체를 수사과정에 방해가 된다거나 하나의 형식적인 요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면 실제 미란다 경고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반 대중의 헌법적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이 인권교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김경한, 2002).

이러한 연구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법제처에서 법제도 선진화 사업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 및 한자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란다 경고문이나 외국인들을 위한 경고문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자어나 부정적인 단어의 사용보다는 중립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국어 경고문의 경우 한국 경고문에 대한 오번역 여부나 한국 경고문과의 차이점을 줄이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란다 경고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형사피의자나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충족시키려면 미란다 경

고에 제시된 각각의 권리들을 이해하였는지 여부와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실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사절차에서의 적정절차를 통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미란다 판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란다 고지의 목적이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한 (2002). 미란다 규칙의 의의와 한국적 수용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김재원 (2007). 묵비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미란다 판결의 법사회학적 분석. *성균관 법학*, 19(2), 583-597.
- 김재홍 (2012).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전체사건의 1%도 안 된다.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3753>.
- 신윤철 (2011). 경기지방경찰청, “외국인 범죄용의자 미란다원칙 고지! 이젠 스마트폰을 활용하세요”. *이뉴스투데이*, http://www2.ewestoday.co.kr/sub_read.html?uid=258819§ion=sc1
- 신의기, 강은영 (2002).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신현중, 탁종연, 김택수, 이영미, 김동범 (2007). 수사, 재판, 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차준호. (2006). 국내 피의자 권리 고지 실태 및 일반 청소년과 소년범의 피의자 고지 이해도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논문.
- Beldon, Russonell, & Stewart Inc. (2001). Developing a national message for indigent defense: Analysis of national survey. Washington DC: National Legal Aid and Defender Association. Accessed via <http://www.nlada.org/DMS/Documents/1211996548.53/Polling%20results%20report.pdf>
- California v. Prysock*, 453 U.S. 355 (1981).
- Colorado v. Spring*, 479 U.S. 564, 573 (1987).
- Feld, B. C. (2006). Juveniles' competence to exercise Miranda rights: An empirical study of policy and practice. *Minnesota Law Review*, 91, 26-100.
- Greenfield, D. P., Dougherty, E. J., Jackson, R. M., Podboy, J. W., & Zimmermann, M. L. (2001). Retrospective evaluation of Miranda reading levels and waiver competency.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19, 75-86.

- Hans, V. P., & Dee, J. L. (1991). Media coverage of law: Its impact on juries and the public.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2), 136-149.
- Helms, J. L. (2003). Analysis of Miranda reading levels across jurisdictions: Implications for evaluating waiver competency.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and Practice*, 3, 25-37.
- Iowa v. Tovar*, 124, S. Ct. 1379 (2004).
- Kassin, S. M., Goldstein, C. C., & Savitsky, K. (2003). Behavioral confirmation in the interrogation room: On the dangers of presuming guilt. *Law and Human Behavior*, 27(2), 187-203.
- Kassin, S. M., Leo, R. A., Meissner, C. A., Richman, K. D., Colwell, L. H., Leach, A. M., (2007). Police interviewing and interrogation: A self-report survey of police practices and beliefs. *Law and Human Behavior*, 31, 381-400.
- Kassin, S. M., Drizin, S. A., Grisso, T., Gudjonsson, G. H., Leo, R. A., & Redlich, A. D. (2010). Police-induced confessions: Risk factors and recommendations. *Law and Human Behavior*, 34: 3-38.
- Kassin, S. M., & Norwick, R. J. (2004). Why people waive their Miranda rights: The power of innocence. *Law and Human Behavior*, 28(2), 211-221.
- Leo, R. A. (1996). Inside the interrogation room.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6, 266-303.
- Leo, R. A. (2008). *Police interrogation and American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Lachlan, K., Roesch, R., Douglas, K. S. (2011). Examining the role of interrogative suggestibility in Miranda rights comprehension in adolescents. *Law and Human Behavior*, 35, 165-177.
-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1966).
- Payne, B. K., Time, V. M., & Gainey, R. R. (2006). Police chiefs' and students' attitudes about Miranda warning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 653-660.
- Rogers, R. (2008).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Emerging Miranda re-

- p>search and professional roles for psychologist.
- American Psychologist*
- , 63(8), 776-787.
- Rogers, R., Correa, A. A., Hazelwood, L. L., Shuman, D. W., Hoerstring, R. C., & Blackwood, H. L. (2009). Spanish translations of Miranda warnings and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Law and Human Behavior*, 33, 61-69.
- Rogers, R., Harrison, K. S., Shuman, D. W., Sewell, K. W., & Hazelwood, L. L. (2007). An anaysis of Miranda warnings and waivers: Comprehension and coverage. *Law and Human Behavior*, 31, 177-192.
- Rogers, R., Hazelwood, L. L., Sewell, K. W., Blackwood, H. L., Rogstad, J. E., & Harrison, K. S. (2009).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Miranda vocabulary scale. *Law and Human Behavior*, 33, 381-392.
- Rogers, R., Hazelwood, L. L., Sewell, K. W., Harrison, K. S., & Shuman, D. W. (2008). The language of Miranda warnings in American jurisdictions: A replication and vocabulary 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32, 124-136.
- Rogers, R., Harrison, K. S., Hazelwood, L. L., & Sewell, K. W. (2007). Knowing and intelligent: A study of Miranda warnings in mentally disordered defendant. *Law and Human Behavior*, 31, 401-418.
- Rogers, R., & Shuman, D. W. (2005). Miranda and beyond: Comprerencies related to police investigations. In R. Rogers & D. W. Shuman (Eds.), *Fundamentals of forensic practice: Mental health and criminal law* (pp. 113-149). New York: Springer.
- Rogers, R., Rogstad, J. E., Gillard, N. D., Drogin, E. Y., Blackwood, H. L., & Shuman, D. L. (2010). "Everyone knows their Miranda rights": Implicit assumptions and countervailing evidenc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6(3), 300-318.
- Rost, G. C., & McGregor, K. K. (2012). Miranda rights comprehension in young adults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21, 101-108.

- Ryba, N., Brodsky, S. L., & Sholsberg, A. (2007). Evaluation of capacity to waive Miranda rights: A survey of practitioners' use of the Grisso instruments. *Assessment*, 14(3), 300-309.
- Time, V., & Payne, B. K. (2002). Police chiefs' perceptions about Miranda: An analysis of survey data.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 77-86.
- Weisselberg, C. D. (2008). Mourning Miranda. *California Law Review*, 96, 1520-1602.
- Wrightsman, L. S., & Pitman, M. L. (2010). *The Miranda ruling: Its past, present and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Korean Miranda Warnings : Problems and Solutions

Kim, Min C.*

This study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Miranda warnings in the U. S. as well as a number of problems associated with Miranda warning variations and its comprehension. The study also reviewed a number of research studies to measure the understanding of Miranda warnings by various groups. Based on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the U. S., Miranda warnings used in Korea were evaluated and the status of practicing Miranda warnings by Korean investigators were reviewed. Although Korean police recently developed a Miranda Warning application to be used by non-foreign language speaking officers to ensure proper notification of rights to foreign suspects, some discrepancies were identified in its contents and wordings between Korean and English warnings. The possible implications and remedies for Miranda warnings used in Korea were also discussed.

❖ Key words : Miranda Decision, Miranda Warnings, Interrogation, Reading Level, Miranda Comprehension

투고일 : 8월 29일 / 심사(수정)일 : 9월 14일 / 게재확정일 : 9월 24일
--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Assistant Professor.